<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 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 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u>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 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쉬림프쉐프]

정 보 공 개 서

㈜골든트리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5.03.05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로19길11,4층(신정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2-3666-0222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2-3666-0223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관리팀 02-3666-0222

목 차

I.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п.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ш.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٧.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신설)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함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 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 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 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 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	지	주 소					
	쉬림프쉐프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로19길11,4층(신정동)					
주식회사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골든트리	2022년2월21일		2022년5월7일	경근호	02-3666-0222		02-3666-0223	
	법인등록번호	1942	11-0348608	사업자등	록번호	335-87-0249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716		기간	직위	담당 업무			
엄익균	이사	2022.02.21~현재	이사	상품개발			
최윤서	감사	2022.02.21~현재	감사	경영감사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해당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쉬림프쉐프	새우+분식 메뉴
상 호②	쉬림프쉐프 00점	프리미엄 분식매장

상표(서비스표)③



출원번호: 40-2024-0052650

등록번호: 4022125590000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594,671	551,952	42,719	801,466	-7,970	-7,280
2023년	965,218	1,207,260	-242,042	1,803,778	-277,531	-285,278
2024년				2,035,702		

현재 2024년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아 2023년까지 재무제표의 정보를 기재 하였습니다. 2024년의 재무상황은 향후 정기변경등록으로 수정하겠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1.0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경근호	대표이사	2022.05.12. ~ 현재	대표이사	가맹사업총괄		
관련 임원	엄익균	이사	2022.02.21~현재	이사	상품개발		

최윤서	감사	2022.02.21~현재	감사	경영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①
· <u>-</u>	상근	비상근	. = . ()
2024년 12월 31일	4	0	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쉬림프쉐프]와 동일하 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 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Shrinip Chef	가맹점 내외부 부착 홍보	등록일자 2024년6월24일 등록번호 40-2212559	출원일자 : 2024.03.21 출원번호 : 4020240052650	경근호	2034년 6월24일 (2026년 2월16일)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Π. 가맹본부의 [쉬림프쉐프]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 가맹사업 예정

(직영점을 시작한 날: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2022년 5월 31일)

2. [쉬림프쉐프] 연혁

회 사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골든트리	쉬림프쉐프	경근호	0년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19길11,4층(신정동)

3. [쉬림프쉐프] 업종

영업표지	업종			
쉬림프쉐프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크림새우,반반새우,마라새우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쉬림프쉐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 \\ \ \\ \\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0	1	1	0	1	1	0	1
서울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1-	-	1-	-	1-	-	1	-	1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쉬림프쉐프] 가맹점 수

0개점 (단위: 개)

6. [쉬림프쉐프]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와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가맹사업 외에는 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2024년 말 기준 가맹점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쉬림프쉐프]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쉬림프쉐프]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②
2024	해당없음	해당없음

(1)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기준

(2)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기간 기준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쉬림프쉐프]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②	상호/명칭 ^③	주 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쉬림프쉐프]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 과 같습니다.

구분1	수단②	기간③	지출 비용	H 124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소계	해당없음	없음	없음	없음	
광고	소계	해당없음	없음	없음	없음	
판촉	소계	해당없음	없음	없음	없음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협은행]에 예 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농협은행	용두동지점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68	02-925-4313	
계좌번호	301-0356-2323-3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농협은행]에 [가맹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농협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 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골든트리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농협은행 용두동지점]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 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쉬림프쉐프]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7,700]				
					반환 시 당사에서
	5,500				정한 기준의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영업 개시	가맹점 모집을	위약금을 공제
가입비			이전까지 계약	위해 소요된	(계약금을 별도로
			해지	실제 비용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교육비	2,2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가맹점 오픈을 위해 소요된 인건비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	----------------	--------------------------	--------------------------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비고
총계	[3,000]			
(현금)보증금	3,000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직전년도 전체 가 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 금(원·부재료 대금 포 함)의 3배 이내 ⁴
담보목적물	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	가맹희망자의 동산 에 질권설정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0,700
가입비	5,500
교육비	2,200

보증금 3,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8]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²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골든트리	34,000	3,400			전용10평기준
필수설비 (튀김기, 냉장고, 간택기 등)	㈜골든트리	10,000	1,000	설치 7일 이전	발주 전 계약취소	튀김기2대 냉장고1대 간택기등기준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골든트리	18,000	1,800	착공 7일 이전	공사 전 계약취소	33㎡기준 3.3㎡ 늘어날 때마다 1,800천원 추가부담
익스테리어 (내·외부 사인물)	㈜골든트리	3,000	300	착공 7일 이전	공사 전 계약취소	1면 5m기준 플렉스간판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골든트리	3,000	300	물품 공급 1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식자재 디자인소모품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젒음	없음	없음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개점전 계약취소 (그간 소요 비용 제외)	일반 소모품비등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직영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

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공사의 경우 목공, 전기, 조명, 바닥, 주방, 벽면, 금속, 설비 공사 외 금액이며, 임대매장 시설물 환경을 가맹계약 후 실측한 후 추가청구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맹본부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면 제공 및 공사의 감리를 진행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실측 및 설계 도면 제공비 (삼백만원)과 공사감리비 3.3㎡당 (이십만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게 공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당사 점포개발팀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전화: 02-3666-0222)	구함
(근피. 02-3000-0222)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7007107	- 국괴역중에 불극시표가 따르 것 -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쉬림프쉐프]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잔금
금액(천원)	5,000	총액의 50%	총액의 50%
납부일		계약일	계약일+1월
비고			오픈 시 완납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골든트리	월 30만원	매월 말일			
리스료	㈜골든트리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골든트리	없음				광고 필요시

				지급
교ᄎᆸ다ᄀ	㈜골든트리	행사별로	다음 월	판촉 필요시
한촉분담금 -		분담 등	20일	지급
교육훈련비	㈜골든트리	교육별로	교육 실시	교육 필요시
		분담 등	10일 이전	지급
간판류	㈜골든트리	해당없음		
임차료		410 B.E		
	㈜골든트리			부득이한 경우
영업표지				변경될 수
변경 등에		영업표지		있으며,
따른		변경	간판 변경	교체비용은
간판변경		별로 등	후 2일 이내	당사자의
비용⑤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MOTIM	(*) 3 5 6 1			협의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골든트리	해당없음		
工0日	メン フローコ			그센 보스 피스 네
	㈜골든트리	교체		교체. 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시설, 각종		변경	교체. 보수	내구연수 등을
기기의		별로	후 5일 이내	감안하여 당사
교체. 보수비용		티		와 협의하여 결
				정
7 - 1 - 1 - 1 · 1	㈜골든트리	가맹본부		
점포환경개선		분담비용을		VII-1 참조
비용		제외한 나머지		
재고관리 비용	㈜골든트리	해당없음		

회계처리	㈜골든트리	웨다어ㅇ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골든트리	해당없음		
지연이자®	㈜골든트리	연10%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매출관리	실제 매출액 감독	분기별 1회	02-3666-0222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3,300]				
추가 가맹비4	2 200	갱신 시작 30	교육 시작 1일 이		추가갱신
구기 기정비》	3,300	일 이전	전에 계약 해지		필요시
점포 이전비®	협의하여 분담	점포 이전 후	점포 이전에 합의		점포이전
	합의에서 준요	10일 이내	하지 않을 경우		합의시
추가 교육비4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교육 시작 1일 이		추가교육
<u>구기 교육미</u> °	ㅂㅋッ५ ㄹㅇ	이전	전에 계약 해지		필요시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 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

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 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쉬림프쉐프]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 골든트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가맹계약서 39항 1쪽에 나와 있습니다.

※ 양도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또한,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별도로 **양수인이 가맹본부에 교육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 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 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본 항목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기 바랍니다. 정보 공개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지나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법률 자문을 거친 후에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쉬림프쉐프]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 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 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 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 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쉬림프쉐프]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지정된 상품	1회 위반: 구두 경고	
용역 외 상품	2회 위반: 2회 이상	
사용금지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지정된 상품 용역 외 상품	1회 위반: 구두 경고 지정된 상품 2회 위반: 2회 이상 용역 외 상품 서면 시정요구 사용금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①	상품·용역명 ^②	제한내용 및 조건 ³	위반시 책임④	비고®
만19세미만 청소년 (미성년자)	주류	판매금지	1회 위반 :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①	권장가격(단위: 원)2	가격 통보 방법	비고③
크림새우	16,000	변동시 공문 공지	2024.12월 기준
반반새우	16,000	변동시 공문 공지	2024.12월 기준
마라새우	16,000	변동시 공문 공지	2024.12월 기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일반인에게 크림새우등을 판매하는 업종	쉬림프쉐프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네이버지도-길이재기 기준)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500미터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구체적인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의 범위는 계약체결시 상호합의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행정구역당 1점포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으로 인정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
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 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		
2	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 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 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 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	
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 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쉬림프쉐프]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쉬림프쉐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

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해당 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②
2024	0%	10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쉬림프쉐프]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는 시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	
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1.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인력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41조

수 있다. 다만,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된 평가기준(평가기준, 평가시기, 평가방식, 갱신기준이 포함되어야 함)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하기로 한다. 이 때 가맹본부는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갱신여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 3.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4.가맹본부가 제1항 단서의 어느 사유를 들어 계약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제3항의 거절통지를 한 경우가 아니면, 가맹계약은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3년)간 갱신된 것으로 본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가입비를 추가로 납부한다.

- 5.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가맹점사업자가 계약만료 60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
- (2)천재지변 등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3)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4)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 (5)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계약조문
1.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본 계약에서 정한 물품공급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42조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1항,3항~
3.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약정한 물품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등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및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개시 후 1년간 발생한 매출의 월평균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가맹본부의 장래의 기대이익 상실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5.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가맹본부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 (3)가맹본부가 압류,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 행정적 처분을 당한 경우
 - (4)천재지변으로 점포 운영이 곤란한 경우
- 6.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	관련계약조문
2.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1)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개시된 경우 (2)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5)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후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 3개월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다만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본호의 내용을기재한 경우에 한한다)(6)가맹점사업자가 무령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8)가맹점사업자가 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9)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시하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경우는 제외한다)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경우는 제외한다)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경우는 제외한다)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경우는 제외한다)	42조 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해당사항없음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원칙적으로 최초 가맹계약기간 동안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영업양도양수가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②	양도 절차 [®]	H 124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ㅁ이. 카메고니티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	
수할 것	수. 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02-3666-0222)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

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앞서 내용을	교육수료 및
07	0 T D M T T M M	_ 포는 선디의구 	참고하여 작성]	교육비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지정한 범위 내의	상동	상동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지정한 범위 내의	상동	상동
		권리의무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가맹계약지역 내에서] 귀하가 [쉬림프쉐프]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크림새우등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	
	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문의: 가맹관리팀
_ "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02-3666-0222)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쉬림프쉐프]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영업시간은 (10: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상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변경요청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달리 설정할 수 있다.	월 15일 이상 개점 (가맹점사업자와 당사가 협의하여 조정할수 있음)	문의: 가맹관리팀 (02-3666-02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0시 또는 11 시부터 오후 22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 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①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②	대체 가능 인력®	비고4
1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점주의 부재시
18 48	- '국업 CT	직계가족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쉬림프쉐프]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부담	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1 1 2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正요 결사	-1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대중매체 광고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IJ	"	

	팜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и	п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다라 유동적	n .	n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가맹점) 월 할인금액 제시 → (가맹본부) 자료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부담액 송금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시까지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 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

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비밀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귀책에 따른 위약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영업지역규정 위반 : 1,500,000원

2.가맹금 예치제도 위반 : 5,000,000원

3.교육 및 훈련 미제공 : 1,500,000원

4.이유 없는 재료 공급 중단 : 1,500,000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에 따른 위약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영업지역규정 위반: 5,000,000원

2.영업양도규정 위반: 10,000,000원

3.위생상태 시정조치 거부 : 5,000,000원

4.경업금지의무 위반 : 50,000,000원

5.영업비밀 보호의무 위반 : 50,000,000원

6.허락없는 외부로부터 재료구입 : 5,000,000원

7.허락없는 추가점포개설: 50,000,000원

8.브랜드 통일성 훼손 : 5,000,000원

9.브랜드 이미지 훼손: 50,000,000원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①	소요비용 ^②
----	----	-------------------	-------------------

합계		47일 내외	[상기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 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 ~ 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농협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 ~ 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 ~ 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 ~ 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비용부담	비
사유	비용항목	비용비율	지급절차	제외사유	고
ㅇ점포의 시설,	ㅇ간판교체 비	ㅇ점포의 확장	o가맹점사업자의	ㅇ점포환경개	
장비, 인테리	용	또는 이전을	비용 청구(공사계	선일로부터	
어 등의 노후	ㅇ인테리어 공	수반하지 않	약서 등 공사비용	3년 이내에	
화가 객관적	사비용(장비·	는 점포환경	을 증빙할 수 있	가맹본부의	
으로 인정되	집기의 교체	개선 : 20%	는 서류 첨부) →	책임없는	
는 경우	비용을 제외	ㅇ점포의 확장	90일 이내에 가맹	사유로 계	
ㅇ위생이나 안	한 실내건축	또는 이전을	본부 부담액을 가	약이 종료	
전의 결함으	공사에 소요	수반하는 점	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의 해	
로 인하여 가	되는 일체의	포환경개선 :	지급	지·영업양	
맹사업의 통	비용. 단, 가	40%	(단, 가맹본부와 가	도 포함)되	
일성을 유지	맹사업의 통		맹점사업자간 별도	는 경우 가	
하기 어렵거	일성과 무관		의 합의가 있는 경	맹본부 부	
나 정상적인	하게 가맹점		우 1년의 범위내에	담액 중 잔	
영업에 현저	사업자가 추		서 분할지급 가능)	여기간에	
한 지장을 주	가 공사를 실		o 가맹점사업자가 가	비례하는	
는 경우	시함에 따라		맹본부 또는 가맹	부담액은	
	소요되는 비		본부가 지정한 자	지급하지	
	용은 제외)		를 통하여 점포환	아니하거나	
			경개선을 한 경우	이미 지급	
			에는 점포환경개	한 경우에	
			선이 끝난 날부터	는 환수 가	
			90일 이내에 가맹	ᆼ	
			본부 부담액을 지		
			급		
			<분할지급 시 절차>		
			o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
약서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
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
급
(1차 : 청구일로부
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
차 : 1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 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 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 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 시 → 경영지도 후 [1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 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관리팀 (02-3666-0222)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 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 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 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 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 고 이를 설명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문의: 가맹관리팀 (02-3666-0222)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5.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쉬림프쉐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②
신규 교육	매장 운영 및 조리 교육	현장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쉬림프쉐프]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5일(1일/5시간)	2,2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5일(1일/5시간)	1,100	가맹본부요청
정기 교육	1일(5시간)	440	가맹본부요청
수시 교육	1일(2시간)	없음	가맹본부요청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1)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1개월 이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 될수 있습니다.
- 2)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기한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 3) 기한내 정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Ī	1	강원	설악워터피아점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2983번길88(장사동)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2년7개월	

(단위 : 년, 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③
40.004.200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세금계산서 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40,821,388	기재한 것입니다.]

[※ 매출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기재합니다. 매출액 산정근거 자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가세 부분(10%)은 제외하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